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79호로 2025년 8월 14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및 먹이주기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나.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다.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2009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유해야생동물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포획만 제시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 외에도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영등포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7건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1)법 제23조의3제2항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 등 단편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유해야생동물’과 ‘먹이주기’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는 도시공원, 기반 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금지·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2)법 제73조제3항제9의2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결과를 고시 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는 필요시 금지구역의 변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 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함.
- 안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는 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금지구역의 지정 사유·절차·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여, 구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